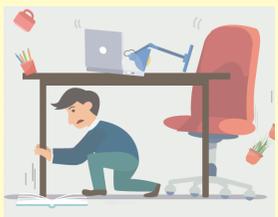


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



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,
평소에 **행동요령**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.

지진으로 흔들릴 때는?



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
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,
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.

흔들림이 멈췄을 때는?



흔들림이 멈추면 **전기와
가스를 차단**하고, 문을 열어
출구를 확보합니다.

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?



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**계단을
이용**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.
(엘리베이터 사용 금지)

*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
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.

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?



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
머리를 보호하며, **건물과 거리를 두고**
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.

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?



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
운동장이나 공원 등 **넓은 공간**으로
대피합니다. (**차량 이용 금지**)

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?



라디오나 공공기관의
안내 방송 등 **올바른 정보**에
따라 행동합니다.

적극적인 시민참여
안전한 대한민국



내진 보강하고 혜택 받으세요



01 내진보강 의의

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, 내진 성능을 갖춘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35.5%(140만여 동 중 52만여 동, 16년말 현재)에 불과합니다.

지진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·신체,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.

02 내진보강 지원대상 민간건축물

① 기존 건축물 :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

② 신축 건축물 :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축물

참고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

건축시기	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
'88년	6층 이상 100,000㎡ 이상
'95년	6층 이상 10,000㎡ 이상
'05년	3층 이상 1,000㎡ 이상
'15년	3층 이상 500㎡ 이상
'17년 2월	2층 이상 또는 500㎡ 이상
'17년 하반기	2층 이상 또는 200㎡ 이상, 모든주택



03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

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, 건폐율·용적률 완화, 건축물의 보험료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① 세제(취득세, 재산세, 소득세 또는 법인세) 감면

구분	지원대상	감면(공제)비율
지방세 감면 ※'18.12.31.까지 한시적 시행	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세 : 신축 50% 감면, 대수선 100% 감면 재산세 : 신축 50% 감면, 대수선 100% 감면 <p>*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</p>
국세 감면 ※'17.12.31.까지 투자한 경우	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	소득세 또는 법인세 : 투자금액의 3~7% (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7%) 감면

② 보험료 할인(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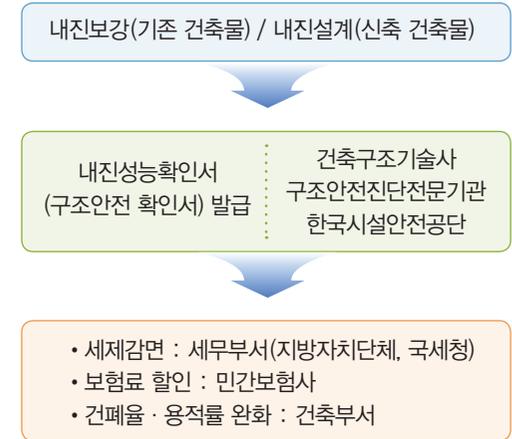
지원대상	보험료 할인비율
내진성능 확보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: - 보험료 20% 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: - 보험료 30% 할인

③ 건폐율·용적률 완화

지원대상	완화 비율
내진성능 확보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폐율·용적률 완화 : 최대 10% <p>※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</p>

04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혜택 절차

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거나,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 반영 후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(구조안전 확인서) 또는 건축물 대장을 관계기관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


05 내진성능확보 표기 신설

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 대장*에 내진설계 유·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, 부동산 중개대상을 확인·설명서**에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.

*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

** 「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」

